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438호(號) 1935(昭和 10)년 3월 1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13호(號)

1934(昭和 9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38호(號)(내선만대여객연대운송규칙[內鮮滿臺旅客連帶運送規則]) 중(中) 1935(昭和 10)년 4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5(昭和 10)년 3월 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6조(條) 중(中) 제2호(號) 및 제3호(號)를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2 각(各) 철도(鐵道)·항로(航路)마다[每] 다른[異] 등급(等級)에 의(依)해 여행(旅行)할 때

3 철도성선발(鐵道省線發)의 것은 동선(同線) 내(內)에서 일부(一部)의 구간(區間)을 다른 [異] 등급(等級)에 의(依)해 여행(旅行)할 때

제7조(條) 운임(運賃) 및 요금(料金)을 계산(計算)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(各) 운수기관(運輸機關)의 킬로미터 수[料程]에 킬로미터[料] 미만(未滿)의 단수(端數)가 유(有)한 때는 소관(所管)을 달리[異]하는 운수기관(運輸機關)마다[每] 단수(端數)를 1킬로미터[料]로 절상(切上)하고, 승차권(乘車券)의 통용기간계산(通用期間計算)의 경우 또한 동일(同一)함.

제19조(條) 제15조(條)에서 제18조(條)까지의 운임할인(運賃割引)을 하는 경우의 할인증(割引證)의 양식(樣式)은 국(局) 여객규칙(旅客規則) 제57조(條), 제58조(條)의3, 제68조(條), 제70조(條), 제72조(條) 및 제74조(條)에서 정한 바[所定]와 동일(同一)하게 함. 단(但) 제15조(條)의 철로총국(鐵路總局)에서 지정(指定)한 학교(學校)의 교직원(敎職員) 기타(其他)에 대(對)한 할인증(割引證)은 철로총국(鐵路總局)이 정한 바[所定]와 동일(同一)하게 함. 성(省) 여객규칙(旅客規則) 제77조(條)의 경우에 사용(使用)하는 할인증(割引證)에는 중앙상부(中央上部)에 철도국(鐵道局), 철도성(鐵道省), 만철(滿鐵) 혹은 대만교통국(臺灣交通局)의 인(印)을 압날(押捺)하고, 또한 성(省) 여객규칙(旅客規則) 제81조(條)의 경우에 사용(使用)하는 할인증(割引證)의 양식(樣式)은 성(省) 여객규칙(旅客規則) 제82조(條)에서 정한 바[所定]와 동일(同一)하게 함.

제28조(條) 중(中) 「제92조(條)」를 「제93조(條)」 개정(改正)함.

제32조(條) 중(中) 「제112조(條)」의 아래[下]에 「제125조(條)에서 제130조(條)까지」를 추가(追加)하고, 「제115조(條)」를 「제135조(條)」로 개정(改正)하고 단서(但書)를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단(但) 철로총국선(鐵路總局線)과의 연대승차권소지자(連帶乘車券所持者)에 대(對)해서는 초과승차[乘越] 및 방향변경(方向變更)의 취급(取扱)을 하지 아니하고, 또 철로총국선(鐵

路總局線)에서 국(局) 여객규칙(旅客規則) 제130조(條), 제140조(條), 제148조(條), 제155조(條)를 준용(準用)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수료(手數料)는 약간[一角]으로 하고, 제140조(條)의 부족한임액(不足運賃額) 추징(追徵)의 경우에서도 수수료(手數料) 약간[一角]을, 또한 제126조(條), 제129조(條), 제135조(條), 제143조(條)의 경우에서도 수수료(手數料) 약간[一角]을 수수(收受)함.